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1191 제출연월일 :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1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를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보고"를 "제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고를 받은"을 "해당 실적을 제출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조(「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3조(「먹는물관리법」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5조제6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6항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8조의3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4조(「석면안전관리법」의 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5조(「수도법」의 개정)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제5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제7조(「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1조의7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1조의9제3항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8조(「악취방지법」의 개정)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9조(「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개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6조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0조(「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1조(「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의 개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연차보고서의 제출)"을 "(관리현황의 통보)"로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을 "관리현황을"로, "제출"을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을 "관리현황의 통보방법 및 통보시기 등"으로한다.

제12조(「지하수법」의 개정)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항 본문 및 단서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를 "환경부장관 및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를 "해 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30조의2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34조의3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보고"를 각각 "제출"로 한다.

제13조(「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15조제7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를 "(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3조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6항・제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제5조 중 「수도법」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 제7조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4항・제9조제2항・제11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 제8조 중 「악취방지법」 제6조제5항・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 제9조 중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제4항・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 제10조의 개정규정, 제12조 중 「지하수법」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3조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4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축분	
뇨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	
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
<u>적의 보고)</u> ① 시·도지사 또는	<u>적의 제출)</u>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에서의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	제출
여야 한다. 이 경우 <u>보고를 받은</u>	<u>해당 실적을</u>
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받은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	②

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 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도・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u>수 있다</u>.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 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 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 • 단속 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시 측정 등) ① (생 략)	제3조(상시 측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②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	
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	<u>통보</u>
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 ~ ④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⑤
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고	<u>통보</u>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6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고, 환경	<u>통보</u>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	⑤
항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	<u>통보</u>
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6
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	
질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보----.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 ④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 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 고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 <u>통보</u>-----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②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	<u>통보</u>
여야 한다.	<u>.</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	②
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	
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도지사	분포지역 관리) ①
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	
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	
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	

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 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등을 고 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사항</u>
- ②·③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시·도지사가 필요하</u>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②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③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	
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마을상수도) ①・② (생	제47조(마을상수도)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③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	
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	
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마을상수	
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후</u>	<u>통보</u> <u>이</u>

단 신설>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 ④ 7 (생 략)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
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생략)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통
	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통보</u>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
	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②
호와 같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4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	<u>통보</u>
다.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 관리) ① (생 략)	질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②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	
를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u>통보</u>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4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보

⑤ (생략)

-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①·② (생 략)
 - ③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 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⑤ (생 략)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 ⑨ (생 략)

(b) (연행과 같음)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제출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6
<u>통보</u>
<u>통보</u>
<u>통보</u>
(7) ∼ (9) (현행과 같음)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	
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대	
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	
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	
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	
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	<u>통보</u>
다.	.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②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	
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	
과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⑤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해	
제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	
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	
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 ③ (생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4
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기	
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통보</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4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	
게 <u>보고</u>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u>통보</u>
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	
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②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	③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가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시 · 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고, 이해	<u>통보</u>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	
여야 한다.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	
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 ~ ③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4
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	
를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u>통</u> 보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제29조의2(관리현황의 통보) ①
시 · 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오염	
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관리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u>제출</u> 하여야 한	<u>통보</u>
다.	
② 제1항에 따른 <u>보고서의 작성</u>	② <u>관리현황의 통</u>
<u>방법 및 제출시기 등</u> 에 관하여	<u>보방법 및 통보시기 등</u>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 ⑧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 ⑧
(생 략)	(현행과 같음)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	9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	
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	<u>통보</u>
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5
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환경부령	
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u>통</u> 보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u>보고</u> 하	<u>통보</u>
여야 한다.	

- ⑥ ~ ⑨ (생 략)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 ④ (생 략)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환경
 - 그 지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 다.
 - ⑥ ~ ⑩ (생 략)
-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① (생 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파 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측정 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측정

0	0	(100)	E D/	
제122	조(지하	수보전-	구역의	지정)
1	~ ④	(현행괴	같음)	
5				
				- <u>환경</u>
<u>부</u> 7	장관 및	! 시장·	군수 •	구청장
<u>에 7</u>	게 알려	야 한다	<u>ł</u> .	

⑥ ~ ⑨ (혀해과 간으)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현행과 같음) ----- 해당 특별

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 다.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

시설(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 ⑤ (생 략)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 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 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 ① (생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 합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u>통보</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
<u>수</u>)
6
통보
통보
<u> </u>
① (현행과 같음)
(2)
<u>제출</u>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	
게만 <u>보고</u> 하여야 한다.	<u>제출</u>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생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	
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	
(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	
조사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u>보고</u>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u>통보</u>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	
의 결과와 시장・군수・구청장	
이 <u>보고</u> 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u>통보</u>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	<u>통보</u>
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 ⑥ (생 략)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환경
부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
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
여야 한다.

-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의3<u>(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u> 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생 략)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하 여야 한다.

	⑦
	<u>통보</u>
제	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통보)
	<u>통보</u>
제	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설치현황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출